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중 “1,263명”을 “1,267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1,238명”을 “1,242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
제1조(생략)	제1조(현행과 같음)
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263</u> 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38명</u> 2. 생략 3. 생략 4. 생략	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1,267</u> 명으로 하고,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42명</u> 2. 현행과 같음 3. 현행과 같음 4. 현행과 같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2. 3. 2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3월 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88회(임시회)제1차위원회(2002년 3월 11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상 고용직(지도원)공무원의 정년이 52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57세로 연장하여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

- 제5조제1항 별표 내용중 근무상한연령 “52세”를 “57세”로 한다.
- 단, 동조례 부칙에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“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(지도원)공무원중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50년 6월 30일생의 근무상한연령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”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고용직공무원(지도원)의 정년을 52세로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청소년보호 등 방법활동을 위해 젊은 인력을 활용키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, 이후 각 자치구별로 조례개정을 통해 정년이 상향조정되었으며, 현재 타구에 비해 정년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직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57세로 정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(안)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3. 4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상 고용직(지도원)공무원의 정년이 52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57세로 연장하여 직원 사기 진작은 물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

- 제5조제1항 별표 내용중 근무상한연령 “52세”를 “57세”로 한다.
- 단, 동조례 부칙에 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“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(지도원)공무원중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50년 6월 30일생의 근무상한연령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”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고용직공무원 정년연장 방침 - 총무 13244-4053(2001.10.30)호
- 지도원 요구안에 대한 조치계획 - 총무 12140-4763(2001.12.13)호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별표 내용중 근무상한연령 “52세”를 “57세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(지도원) 공무원중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50년 6월 30일생의 근무상한연령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=====

[별표]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및 근무상한연령표

현행			개정안		
직종	직명	근무상한연령	직종	직명	근무상한연령
1종	지도원	52세	1종	지도원	57세
부칙신설			(근무상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)		
			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(지도원) 공무원중 1950년 1월 1일생부터 1950년 6월 30일생의 근무상한연령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		